

#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동 위탁 동의안은 2018년 9월 18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 제안이유

- 가. 충청도청과 교육청이 교육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협력 체제 구축
- 나. 마을과 학교가 함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 다. 교육을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소통 프로세스 구축하는
- 라. 학생, 학교,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교육 기관의 육성이 요구되어
- 마.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에 따라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의 목적

-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지원
-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 다양한 학습 기회 및 체험 기회 부여
- 마을교육공동체의 소통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
- 이에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업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

나. 위탁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다. 사업비: 2,295,000천원(매년 765,000천원)

- 특별교부금 80,000천원
- 도교육청 280,000천원
- 지자체지원금 405,000천원
  - (내용별) 도 교육청 위탁운영 2개 사업(180,000천원), 5개 지구 10개 사업행복 교육지구 사업 위탁운영(585,000천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라. 위탁사무: 도 교육청 사업운영 및 5개 지구 10개 사업 운영

- 도 교육청: 학교밖청소년마을학교 운영지원, 마을교사 양성지원
- 지구별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마을학교, 마을교사제, 마을 축제 운영

마. 위탁기관 선정방법: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별 공개 모집 후 수탁 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바.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018. 9~12월
-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심사: 2019. 1~10월
- 위탁내용 홈페이지 공고 및 계약: 2019. 1~10월

사. 위탁기관 선정

- 2개 사업은 도 교육청이 공모사업 진행
- 10개 사업은 도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위탁 사업비 재배정
  - 각 교육지원청 별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진행
  - 지역 교육지원청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 방식 결정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마을과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및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소통하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 (관련 경과) 2017년 제300회 정례회에 상정된 「충남 마을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업의 효과성 및 수탁대상자 자격요건 미흡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부결) 의결된 바 있음
- 본 동의안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기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운영과 마을축제 기획·운영 및 마을교사 양성 등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인력과 기구·재정 부담능력·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책임능력과 공신력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sup>1)</sup>을 고려하여 수탁대상자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위탁비용의 산정은 민간위탁수립단계에서 사후관리(정산)까지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구체적 과업내용, 관리감독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에 소요되는 위탁비용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사업별 편성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1)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2019년 교육협력사업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 위탁 기본계획 (안)

###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민간 위탁
- **근거**
  - 2018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2018.2.9.)  
4.공교육 혁신지원-☐충남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
  -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계획(2018.4.4.)
- **목적**
  -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인재양성에 협력
  -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학습 및 체험 기회 부여
  - 지역의 교육문제를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문화 형성
- **내용**
  - 방과후학교, 주말 및 방학 중 마을교육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교육 등 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
  - 학생, 학교,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을교사제 운영
  -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과 학교가 연계된 마을축제 운영
  - 지역의 마을 교사 양성을 위한 민간 위탁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1.12.31.

□ **중 사업비: 765,000천원**

-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민간 위탁
  - 충청남도교육청: 180,000천원
  - 5개 교육지원청 재배정: 585,000천원

□ **위탁사무**

- 마을학교/마을교사제/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 학교밖 청소년 마을학교 운영 지원
- 마을교사 양성 지원

□ **위탁기관 선정 방법**

-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학교밖 청소년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사 양성 사업은 도 교육청이 직접 위탁 기관 선정
  - 도 교육청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사업비 재배정(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분배 가능)
  - 위탁 기관 선정 방법은 지역교육지원청의 상황에 따라 선택
  - 지원자격
    - 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모임 · 또는 비영리민간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단체
    - 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II 사업 내용

□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주요 사업**

부 문	사 업 내 용
마을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마을교육 이슈(돌봄, 지역사회 이해, 진로교육, 생태환경 등)에 대한 마을교육 계획,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역교육 프로그램</li><li>○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점</li><li>○ 교과활동 이외 학교 밖 다양한 체험이 필요한 교육활동</li><li>○ 좋은 교육, 좋은 학부모가 되기 위한 주민 공부 모임</li><li>○ 지역 문화 예술 단체 및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사업</li><li>○ 지역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연계 사업</li></ul>
마을교사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마을교사 양성(마을에서 활동 가능한 교육활동 참여자)</li><li>○ 교육기부 활성화</li><li>○ 마을교사 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li><li>○ 다양한 직장, 직업을 연계한 진로 체험활동을 마을 교사 발굴</li></ul>
마을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과 학교를 기존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진행</li><li>○ 학교와 학생의 참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li><li>○ 지역의 문화와 특성이 잘 반영된 마을교육공동체 축제 운영</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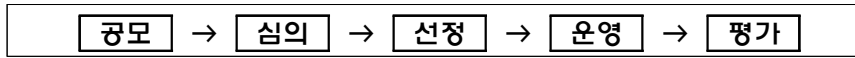
## III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추진주체	비고
2019. 1월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 지구 운영 계획 수립	도 교육청	
2019. 1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위탁 세부계획 수립	시군 교육지원청	
2019. 1월~10월	위탁 기관 공모	시군	홈페이지 등

일정	주요내용	추진주체	비고
		교육지원청	
2019. 1월 ~ 2021. 12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수탁 기관	
2019. 12월~2021. 12월	정산 및 평가	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 운영 절차



- 공모 : 개인, 모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주제 부합 여부, 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증)
- 선정 :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기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 운영 : 선정된 주체(개인, 모임, 단체)별로 운영
- 평가 :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 나눔과, 정산

## IV 예산계획

#### □ 도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사업 내용

(단위:천원)

순	사업내용	예산액
1	학교밖 청소년 마을학교 운영지원	100,000
2	마을교사 양성	80,000

#### □ 지역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사업 내용

(단위:천원)

순	지구	사업내용	예산액
1	아산	마을학교운영	130,000
		학교와 연계한 마을축제운영	40,000
2	논산	학교밖 행복마을학교운영	160,000
		마을축제지원	10,000
		마을교육공동체홈페이지구축	250,000
3	청양	청양 온누리 마을학교 운영	40,000
		마을과함께하는 방과후 돌봄기반구축	20,000
4	공주	공주마을서당	30,000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축제	30,000
5	천안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운영	100,000

## V 기대효과

-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인적자원, 학교 및 지역시설을 연계한 교육 관계망 구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마련
-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발굴
- 위탁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를 구심점으로 교육과 마을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관련법규 발췌

###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등) ②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비 용 추 계 서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도 교육청 및 5개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2019. 1.~ 2021. 12.
- 위탁기간 동안 2,295,000천원 지원(매년 765,000천원)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민간 위탁금	2,295,000	765,000	765,000	765,000	

####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 위탁금(2,295,000천원)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 예정

3. 작 성 자 :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장 이 병 퇴 *병퇴*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외 수입					
세 출		765,000	765,000	765,000	2,295,000
민간위탁금		765,000	765,000	765,000	2,295,000
재원조달		765,000	765,000	765,000	2,29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405,000	405,000	405,000	1,21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280,000	280,000	280,000	84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80,000	80,000	80,000	240,000

## < 재원조달 계획서 >

###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재원조달	765,000	765,000	765,000	2,29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405,000	405,000	40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280,000	280,000	280,000	840,000
기 타(민자 등)	80,000	80,000	80,000	240,000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2,295,000천원) :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마을과 학교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사업 동의 요망

4. 작 성 자 :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장 이 병 도 